

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김윤정*

-
- | | |
|-----------------|-----------------------|
| 1. 머리말 | 3. '內喪在先'의 상복제와 主喪 논쟁 |
| 2. 의인왕후 국恤의 난제들 | 4. 맺음말 |
-

초록: 임진왜란 직후 치러진 의인왕후 국恤은 조선후기 국恤의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부족은 의례 실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왕조례는 매우 보수적인 속성을 보이는데, 수많은 논쟁을 거쳐도 결국은 祖宗前例를 따르는 명분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만큼 전거의 상실이라는 타율적 요인은 禮經을 원칙으로 의례를 정비할 수 있는 내재적 동력이 되었다.

의인왕후 국恤은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소실과 극심한 물자부족, 그리고 여전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明軍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물자와 전적의 부족으로 인해 『국조오례의』와 달리 大斂에 솜옷을 사용하였고, 장지를 선정할 때도 풍수설이 난무하면서 『국조오례의』의 5개월 장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명나라에 再造之恩을 입은 조선의 명나라 눈치보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선은 더욱 철저히 제후국의 의례를 실천해야 했고, 왕비의 국상에서 당연히 사용되었던 '山陵'이나 '后'라는 용어의 僭禮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타자의 시선 속에서 왕조례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도 왕조례의 특수성보다는 성리학적 명분론의 원칙에 더욱 천착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의인왕후의 국恤은 '먼저 난 내상'으로, 『국조오례의』에는 참고할 내용이 부족했으므로 새로 의례를 정비해야 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전례를 상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의 원칙을 강조하는 예학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 '內喪在先'에 대한 왕의 상복은 백단령·마포대로 30일을 마치는 短喪에 불과했고, 父在爲母喪의 기년복을 입는 세자가 主喪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의 상복은 처상의 기년복으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인식되었고, 실제로 12일간 자최상복을 입도록 정해졌다. 이후 백단령·마포대로 30일 만에 마치는 장경왕후상의 전례가 확인되면서, 12일간 자최상복을 입고 이후 30일 만에 마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12일 만에 公除하는 방식이고 30일 만에 마치는 단상이었지만, 조선전기 '내상제선'의 경우 왕은 아예 자최상복을 입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복의 원칙이 강조된 것이었다. 또한 왕이 주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왕이 세자로 하여금 의례를 주관하게 한다는 문장을 축문에 명시하였다. 『가례』를 근거로 '使世子'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가례』를 왕조례에 창의적으로 결합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懿仁王后, 國恤, 임진왜란, 제후국, 內喪在先, 主喪

1. 머리말

임진왜란이 끝난 지 2년만인 1600년, 아직 전쟁의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宣祖妃 懿仁王后 朴氏(1555-1600)가 사망했다. 전쟁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國恤인 만큼,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소실과 극심한 물자부족, 그리고 여전히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明軍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의례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례인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와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가 제작되었고, 이들 의례들은 조선후기 국휼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의인왕 후 국휼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국휼의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국휼의례는 주로 유교적 국가의례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 주자성리학 적 의리명분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었고,¹⁾ 상대적으로 실제 의례의 시행이나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는 미진하였다. 최근 조선전기 실록에 남아있는 儀註들과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통해 국휼의 기본틀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

1) 지두환, 1996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경희, 2000 「朝鮮前期 禮制·禮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희재, 2010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²⁾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18세기를 중심으로 의궤·등록·일기 등의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면서, 왕과 왕비의 국장뿐만 아니라 세자와 세자빈, 후궁, 공주 등 다양한 왕실 구성원들의 상장례에 대해 연구들이 축적되었다.³⁾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6-17세기 국휼의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와 후기가 단절적으로 이해되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기와 후기 의례들의 차이점만이 강조될 뿐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상황이다. 임진왜란 직후에 치러진 의인왕후의 국휼은 이러한 간극과 변화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임진왜란 직후 조선이라는 시간적·공간적 배경 속에서 의인왕후 국휼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으로 인한 典籍의 소실은 의례 실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참고할 전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 의인왕후의 국휼은 왕실의 의례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하였다. 왕조례는 매우 보수적인 속성을 보이는데, 수많은 논쟁을 거쳐도 결국은 祖宗前例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만큼 전거의 상실이라는 타율적 요인은 禮經을 원칙으로 의례를 정비할 수 있는 내재적 동력이 되었다. 사례를 치러야 하는 급박함과 前例를 찾을 수 없는 난감함 속에서 왕조례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예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이상적인 논의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될

-
- 2) 양정현, 2014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45;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조용철, 2014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45; 이지훈, 2014 「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 『역사민속학』 45.
- 3) 김세은, 2004 「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祔」, 『규장각』 27; 이영춘, 2010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戊戌苦次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 이현진, 2011 「순조의 장녀 明溫公主의 喪葬 의례: 『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6; 이현진, 2012 「정조대 文孝世子の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 이현진, 2014 「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6; 김윤정, 2014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32; 이현진, 2015 「순조대 惠慶宮의 喪葬 의례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4; 김윤정, 2016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이현진, 2016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 『한국문화』 74; 이현진, 2016 「조선후기 綏嬪 朴氏의 喪葬 의례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6.

수 있었다.

이에 의인왕후 국훈의례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의인왕후 국훈의례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쟁 이후 조선의 상황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의인왕후 국훈의 시행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독특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의례의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인왕후 국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예학적 논점을 분석하였다. 의인왕후 국훈은 의인왕후가 선조 생존시에 사망했다는 점에서 ‘먼저 난 내상[內喪在先]’에 해당되는데, 『국조오례의』에는 이 경우의 의례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왕의 처상과 기년복의 방식, 그리고 主喪이 남편인 왕인지 아들인 세자인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예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조선후기 국훈의례가 재정비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 의인왕후 국훈의 난제들

1) 전쟁 이후 典籍과 물자의 부족

의인왕후는 선조 33년(1600) 6월 24일부터 갑작스런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고, 증상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6월 27일에 사망하였다. 의인왕후 국훈은 기본적으로 『국조오례의』에 따라 진행되었다. 사망 당일 復과 목욕을 시행했고, 殯殿都監·山陵都監·國葬都監이 설치되었다. 사망 다음날인 28일 辰時에 襲을 하였는데, 물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饌品과 物品을 다 갖추지 못했다.⁴⁾ 28일 申時에 小斂을 행했는데,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왕비의 소렴은 3일째 해야 하지만 여름철이었으므로

4)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戊戌 “襲奠饌品甚盛, 非徒物力難給, 時刻之間, 亦難及措. 色品雖不敢減, 多少之數, 則隨便爲之, 此後諸奠, 皆依此爲之.”

2일째에 이루어졌다. 大斂은 5일째인 7월 1일 丁時에 시행되었다. 여전히 궁궐이 재건되지 못하여 정릉 행궁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殯殿 역시 桂林君 집의 대청에 마련되었다. 사망 6일째인 7월 2일에 성복이 이루어졌다.⁵⁾

국휼의 진행은 참고할 典籍의 결여와 심각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들이 『오례의』를 상고하건대 염습에 쓰이는 의복이 9벌[稱], 小斂에 19벌, 大斂에 90벌이었습니다. 그 수량이 이렇게 많은데 該司의 物力으로는 전혀 준비할 계획이 없으므로 신들은 마주 보고 눈물만 흘릴 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난리 이후로 증거삼을 만한 謄錄이 없으므로 종전에 內藏했던 衣櫛를 參用했는지를 역시 모르겠습니다.”⁶⁾

당시 『국조오례의』를 참고할 수 있었으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증거삼을 만한 등록’이 없어서 우왕좌왕하였다. 또한 필요한 의복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만큼 전쟁 후 조선의 물자부족은 심각했다. 빈전도감은 병조 등 각처에 저장된 銀兩을 거두어 대렴에 쓸 의상 90件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당시 長生殿에 준비된 梓宮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렴에 솜옷[襦衣]을 써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조오례의』에는 염습에 겹옷[袷衣]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겹옷 90벌만으로는 재궁을 다 채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빈전도감은 세속을 따라 솜 넣은 옷을 써야한다고 제안하였고 선조의 윤허를 받았다.⁷⁾ 솜옷은 재궁의 공간을 채우기 위한 補空용으로서 의인왕후와 인목대비의 대렴에 사용되었다.⁸⁾ 그러나 다른 의례에는 등장하지 않고, 18세기 『國朝喪禮補編』에서도 염의에는 겹옷과 겹이불을 쓰는 것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솜옷의 사용은 의인왕후 국휼의 일시적인 변용으로 볼 수 있다.

5) 의인왕후 국휼의 주요 절차는 <표 1> 참조.

6)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己亥.

7)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己亥.

8) 고영, 2016 「朝鮮後期 王后의 염습의대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4-187면.

9) 『국조상례보편』 권1 大斂 “斂衣九十稱. 【皆用袷衣袷衾(內備)】”

이후 장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호조는 “물자는 이미 바닥이 나서 남은 것이 없”으므로 경상도 감영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마련한 목면이나 평안도 병영에 비축한 쌀의 일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⁰⁾ 또한誌石을 만들 돌을 채석하는 것은 공역이 많이 드는 일이었으므로, 民力을 아끼기 위해 宣陵 改葬 때 쓰지 않고 묻어둔 것을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였다.¹¹⁾

의인왕후의 發引은 12월 21일에 이루어졌는데, 사망한지 7개월만으로 『국조오례의』의 5개월 장례 기한을 넘긴 것이었다. 장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발인과 매장, 虞祭, 卒哭 등의 모든 절차가 지연되었다. 장지 결정이 늦어진 첫 번째 이유로는 참고할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평상시에는 國葬에 쓸 만한 산을 등급으로 나누어 치부해 둔 자료를 활용하는데, 전쟁 중에 유실되어 상고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¹²⁾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術士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장지 결정은 번복되었다. 또한 전쟁 이후 왕실의 흥망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 선조는 풍수적으로 최상의 길지를 열망하였다.¹³⁾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술사인 葉靖國과 李文通을 장지 선정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¹⁴⁾ 풍수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처음에 포천의 新坪으로 장지를 정하여, 40일간이나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 참봉 朴子羽가 상소를 올려 “庶人道 쓸 수 없을”만큼 흉한 곳으로 신령을 지목하면서, 새롭게 장지를 결정해야했다. 寒岡 鄭述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풍수설에 따라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禮文의 다섯 달 기한이 흘러가 버리고, 전쟁에 시달려 거의 죽어가는 백성들이 힘을 쓸 여력이 없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⁵⁾

10)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癸卯.

11)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戊申.

12)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壬寅 “平時則國葬可用之山, 有分等置簿, 亂後文籍散失, 無從可考, 只憑數三術官口傳, 得七處, 而等第高下, 則必無遺往審, 然後可定, 故開單以啓.”

13) 노대환, 2012 「광해군대의 궁궐 경영과 풍수지리설」, 『조선시대사학보』 63, 230면.

14) 『宣祖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壬寅.

15) 『宣祖實錄』 권128, 선조 33년 8월 己亥: 『宣祖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甲辰.

새로 交河縣 猪峴과 獨牆山의 李好閔 묘산이 후보지로 정해졌고, 교하 저현이 장지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보토허 땅이 너무 넓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의 어려움이 컸으므로, 저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해진 선조는 다시 독장산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李友閔 등 사대부의 묘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발견되었고, 이 땅을 장지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¹⁶⁾ 이미 5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다시 장지를 선별해야만 했고, 결국 건원릉의 火巢지역으로 정해졌다.¹⁷⁾ 이러한 결정은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의인왕후 국恤의 주요 절차

날 짜	의 레			
1600년 6월 27일	薨	復	沐浴(亥時)	都監설치
6월 28일	襲(辰時)/奠	靈座	小斂(申時)/奠	
7월 1일	大斂(丁時)/奠	成殯/奠		
7월 2일	成服(乙時)/奠			
7월 15일	望奠(매월 15일 시행)			
7월 28일	進香(왕이 영의정을 보내어 시행)/ 왕세자(8.3)/ 백관(8.7)/ 종친부(8.10)/ 의빈부(8.11)/ 왕자(8.15)/ 충훈부(8.16)/ 경기관찰사(8.19)/ 돈녕부(8.24)/ 강원도관찰사(8.25)/ 황해도관찰사(8.29)/ 평안도관찰사(9.1)/ 충청도관찰사(9.4)/ 경상도관찰사(9.7)/ 전라도관찰사(9.9)/ 함경도관찰사(9.10)			
8월 1일	朔奠(매월 1일 시행)			
10월 27일	改銘旌/奠			
12월 14일	臘享奠	殯殿門牆破壞奠		
12월 20일	啓殯/奠	祖奠(申時)		

16) 『宣祖實錄』 권130, 선조 33년 10월 乙酉; 辛卯: 『宣祖實錄』 권131, 선조 33년 11월 壬寅.
 17) 유릉 택지 과정의 풍수담론은 이덕형, 2010 「선조대 유릉 택지에서 드러나는 왕릉 조영의 변화와 원인」, 『지방사와 지방문화』 12에 자세하다. 이덕형은 이 과정을 왕과 사대부 간의 갈등으로 보면서, 유릉이 이항복 등에 의해 건원릉 화소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는 왕권보다는 신권 위주의 체제로 변모해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192면) 그러나 왕의 명령에 따라 사대부 묘의 이장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권 위주’라는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12월 21일	造奠(良時)	發引(寅時)		
12월 22일	下玄宮(卯時)	返虞(혼전:孝敬殿)	初虞祭	*靈輿殿 화재
* 재우제(12.24) 삼우제(12.26) 사우제(12.28) 오우제(12.30) 육우제(1.2) 칠우제(1.3) * 기록은 없으나 『국조오례의』에 따라 육우까지는 柔日, 칠우는 剛日에 거행한 것으로 추정함.				
1601년 1월 5일	卒哭祭(剛日)			
4월 19일	練祭(11개월)	*날짜가 11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다른 설명이 없음.		
6월 27일	祥祭(13개월)			
8월 ○일	禫祭(15개월)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담제를 이미 지냈다는 기록은 있음.		
* 15개월 담제 이후에도 혼전에서의 제사는 계속됨. * '내상재선'이므로 선조와 함께 종묘에 祔廟하는 1610년 4월 11일까지 혼전이 유지됨.				

2) 명나라의耳目과 제후국 조선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明軍이 도성에 주둔해 있는 상황은 의인왕후 국휼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당시 선조와 관리들은 조선의 왕조례가 갖는 ‘僭禮’의 측면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명군에게 알려질 경우 조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다. 선조와 관리들은 명군 지휘부의 끊임없는 간섭과 혼수에 시달리고 있었고,¹⁸⁾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은 의인왕후 상례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먼저 ‘陵’이나 ‘后’등의 용어가 갖는 참례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전례에 따르면 당연히 諡號·陵號 등을 올려야 했지만, 선조는 황제의 용어인 ‘陵’과 ‘后’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참례’의 가능성을 걱정하였다. 선조는 丁應泰 변무사건을 언급하면서 “참례가 되지 않는 일이면 하고 참례에 저촉된다면 추후에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응태는 명나라 장군으로, 楊鎬와 갈등하면서 조선이 왜를 불러들여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으로 조선을 모함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이 스스로 ‘祖宗’을 칭하여 번국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¹⁹⁾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8) 한명기, 2015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 518면.

19) 허지은, 2004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 본 조·명관계」, 『사학연구』 76, 180면.

조선에서는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해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이후 선조는 명나라 장군들이 조선의 사정을 명나라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李恒福, 尹斗壽 등의 대신들은 전례를 따르는 것이 참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제후의 범도를 삼가며 대대로 예의를 지켜 모든 儀章과 名號에 있어 조금이라도 참람한 데 가까우면 모두 피하였습니다. 오직 列聖의 廟號와 陵號 및 后자로 칭한 것 등은 관례로 인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개 국내의 신민이 君上을 존경하여 받드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 지금 중국 장수가 듣는다고 혐의하여 우선 정지하고 추후에 의논하기로 한다면, 다만 중국 조정의 이목을 끝내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리로 보아도 또한 몹시 구차합니다. 시호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부인에 대해 시호를 칭하는 의의가 없어서 비록 천자에게 稟命하지는 못하였으나, 제후의 부인과 대부의 처는 모두 시호가 있었습니다. … 시호가 참람한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마땅히 구례를 따라 준행할 것이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²⁰⁾

묘호와 능호 및 왕후라는 용어는 관례에 따라 조선 내에서 존경하여 받드는 의도일 뿐이고 제후의 부인과 대부의 처도 모두 시호가 있었으므로 참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의 장수가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추후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鄭昌衍, 黃佑漢 등은 선조의 뜻에 따라 추후에 할 수 있는 일은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 銘旌은 外梓宮 안에 넣어야 하므로 徽號와 諡號는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근수는 명정에 휘호와 시호를 쓰더라도 중국인이 보아서 안되므로 발인할 때는 개서하지 않은 명정을 사용하고 개서한 명정은 외재궁 안에 넣기만 해야 한다는 편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선조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했다. 이에 이항복 등은 능호는 추후에 내려도 괜찮고 지금은 殿號와 諡號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조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호는 懿仁, 혼전은 孝敬, 능은 裕로 정해졌다. 뒤이어 선조는

20)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乙巳.

산릉이란 말은 본래 쓸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릉’자를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²¹⁾ 이에 따라 山陵都監이라는 명칭 대신 國葬外都監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8월 17일에는 因山都監으로 변경되었다.²²⁾ 인산도감이라는 용어는 선조대 의인왕 후상에만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로서 ‘릉’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守陵官과 侍陵官도 守園官과 侍園官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변경되었던 용어들은 11월 24일에 산릉도감, 수릉관, 시릉관으로 환원되었다. 9월에 명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명나라의 이목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사관은 ‘릉’과 ‘후’를 없애자는 주장은 “우리 동방에서는 처음 나온 논의”로서 正論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²³⁾ 대사간 朴弘老 역시 ‘릉’과 ‘후’의 사용에 대해 조정의 대신들이 “옛 것을 따르려고만 하고 바른 도리로 돌아설 생각을 앎”고 “중국조정의 이목을 은폐”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하였다.²⁴⁾ 이러한 주장들은 ‘릉’과 ‘후’가 제후국 조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참람한 용어라는 인식이 조선 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왕실의 전례가 갖는 보수성은 매우 강고하였고, 명군의 이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원래의 형태로 복구되었다.

두 번째로 명나라 장수들의 弔問과 回禮 의절을 마련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6월 30일에 선조는 명나라 장수들이 조문 온다면 어떤 예절로 대해야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조문과 회례의 절차가 불편하다는 점에서 “중국 조정의 존귀한 衙門이 우리나라의 下喪에 친히 조문 오는 일은 매우 미안하다는 뜻으로 글을 만들어 조문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제안할 지경이었다.²⁵⁾ 예조는 왕이 복을 벗기 전에는 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를, 陪從臣은 烏紗帽·淺淡服·烏角帶·백피화를 착용하고, 복을 벗은 후에는 왕은 익선관·素服·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며 배종신은

21)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壬子.

22)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7월 28일;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8월 17일 “傳曰國葬內都監稱國葬都監, 而外都監則稱因山都監可矣.”

23) 『宣祖實錄』 권131, 선조 33년 11월 甲子.

24) 『宣祖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辛丑.

25)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辛丑.

앞서의 복색과 같게 하도록 하였다.²⁶⁾

이것은 『국조오례의』의 국상 때 왕이 명의 사신을 접견할 경우 익선관·白袍·오서대를 착용하는 항목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의 복식은 삼년상의 경우로서 지금의 기년상과 다르므로, 차등을 두기 위해 백포를 참포로 변경했다. 그런데 명나라의 제독과 부사가 백의와 오사모를 입고 조문오기로 하면서 선조의 참포가 문제시되었다. 왕이 참포를 입으면 도리어 조문하는 자의 복색보다 가볍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참포를 다시 백포로 바꾸게 되었다.²⁷⁾

7월 3일에 提督 李承勛과 副使 杜潛이 백의와 흑대를 착용하고 와서 조문하였다. 이들은 賻物을 가져왔고 선조는 禮單을 올렸으며 서로 읍례를 한 후 물러갔다. 다음날 선조는 이들의 관사에 나아가 回禮하였는데, 回謝한 후 읍하고 다례를 행한 다음 예단을 올리고 환궁하였다. 조문과 회례의 와중에서도 이승휴는 태풍으로 인한 명군의 피해를 강조하며 명군의 철군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선조를 긴장케 했다.

7월 4일에 同知 韓初命, 通判 陶良性 등이 조문을 왔고 이에 선조는 다음날 回禮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중원에서는 복을 입은 사람은 白衣를 착용하고 회례하는 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조는 이미 이승훈과 두잡에게 회례했으므로 다른 이들에게도 회례해야한다고 주장했다.²⁸⁾ 그러나 한초명이 “중원에는 백의로 회례하는 법이 없는데 더구나 국왕이겠는가”라고 하고, 도양성이 “너의 나라는 본래 예의를 안다고 일컫는데, 지금 국왕이 꼭 백의로 회례하고자 하니 그 예의 소재를 실로 알 수 없다”고까지 말하자, 선조는 회례를 중단하였다. 선조는 백의로 회례한 것이 실례였음을 걱정하면서 “중국인은 흰 빛깔의 옷을 싫어하기 때문에 흰 옷으로 회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승지만 알고 朝報에는 내지 말도록 명령하였다.²⁹⁾ 再造之恩을 입은 조선의 왕 선

26)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壬寅.

27)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癸卯.

28)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乙巳.

29)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丙午.

조는 명나라 장군에게 극진한 예를 다해야하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시행한 회례에 대해 모멸에 가까운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감추고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명군이 조선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의인왕후 국혼은 제후국의 의례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진행되었다. 왕비의 국상에서 당연히 사용되었던 ‘山陵’이나 ‘后’라는 용어가 재검토 되었고, 명나라 장군의 조문과 회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명의 관계를 의례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內喪在先’ 상복제와 主喪 논쟁

의인왕후는 선조의 생존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내상재선’에 해당되었고, 『국조오례의』에는 이 경우의 의절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왕실 의례의 전거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으므로, 실제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절들을 새롭게 보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의 예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먼저 난 내상’에 합당한 상복을 찾고자 하였고, 『의례』·『예기』 등의 고례뿐 아니라 『주자가례』와 명나라의 典禮書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16세기 조선 사대부의 예학적 지식과 검증이 왕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내상재선’ 상복제의 변화

국왕의 상복은 喪期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복을 입고 벗는 기간과 방식에 관해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슬픔을 다하는 상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易月短喪이나 公除의 적용, 視事服과 燕居服 등의 구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

개되었다.

먼저, 왕은 ‘내상재선’의 경우 어떠한 상복을 입는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6월 28일 예조는 『국조오례의』 ‘내명부의 嬪 이하의 상복’에 관한 조문의 註에 “內喪이 먼저 있을 경우, 전하의 복이 끝나기 전[服盡]에는 袷내에 있을 때나 진현할 때에 흰 衣·裳과 黑帶를 착용하고, 복이 끝난 뒤에는 袷내에 있을 때에 淺淡服을, … 졸곡 후에는 袷내에 있을 때에 袷복을 입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왕이 상복을 입는 것은 분명하고, 복이 끝나는 시기는 졸곡 전인 것 같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복이 끝나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므로, 儒臣들로 하여금 典禮를 상고케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선조의 允허를 얻었다.

이에 홍문관 부제학 吳億齡 등은 『中庸』의 朱子註와 『儀禮喪服圖式』을 인용하여, “천자와 제후는 방친의 기년복을 입지 않[天子諸侯絕旁禭]”지만 아내는 종묘를 함께 받든다는 점에서 “존귀함이 똑같음[尊同]”에 해당되므로 기년복을 입는 것이 禮經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³⁰⁾ 한편 예조는 ‘내상재선’의 경우 국왕의 상복은 기년복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단, 묘향산에 史官을 파견하여 실록에서 중종 생존시에 사망한 장경왕후의 전례를 상고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6월 29일 예조는 묘향산 왕래에 10여일이 걸리는데 그 동안 상복을 입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조오례의』와 『大明會典』의 孝烈皇后 상례 등을 참작하여 복제와 變服의 절차를 마련해 보고하였다. 먼저 『국조오례의』의 “외조부모의 상은 5일 만에 벗고[五日而除] 왕비의 부모상은 3일 만에 벗는다”에 의하면 小功인 외조부모의 상은 5일, 緦麻인 왕비 부모의 상은 3일 만에 벗었고 이런 등급으로 미루어보면 대공은 7일, 기년은 9일 만에 상복을 벗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명회전』의 “효렬황후의 상례 때 황제가 상복을 입었다가 12일 만에 벗었”다는 조문을 참작하여 10일 후에 상복을 벗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졸곡

30)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己亥: 史臣은 부부를 尊同으로 볼 수 없고, 『儀禮喪服圖式』에 아내를 위한 기년복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홍문관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전까지는 익선관·백포·오서대를 착용하고 모든 喪事에는 최복을 입다가 졸곡 후에는 길복을 입도록 하였다. 졸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조오례의』의 ‘내명부의 嬪 이하의 상복’ 조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³¹⁾

이에 대해 ‘기년 9일’이라는 계산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12일’이라는 기한은 以日易月한 短喪制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예조는 “가정 7년 孝潔皇后 상에 황제가 10일 동안 현관과 소복을 입은 전례”에 의거하여 12일이 아닌 10일로 정하기도 하였지만, 비판은 계속되었다. 또한 졸곡 후에 상복을 벗자마자 길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말세의 풍조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³²⁾

이러한 논란 속에서 예조는 “12일 기한이 단상제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졸곡 전에는 모든 喪事에 衰服을 입고 이른바 상복을 벗는다는[除服] 것도 다만 公除일 뿐이니 졸곡 전에는 오히려 복을 입는 셈”이므로, 실제로는 이미 단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³³⁾ 12일 만에 상복을 벗는 것은 공제, 즉 공무를 위해 임시로 상복을 벗는 것일 뿐이고 졸곡 전에는 喪事에 최복을 입다가 졸곡 후에 비로소 吉服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단상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조의 주장에 따라 상복인 최복은 12일 만에 벗고, 졸곡 전 평상시에는 黑頭冕·白衣·白帶를, 引見 및 朝參시에는 익선관·참포·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며, 모든 喪事에는 최복을 입도록 하였다. 졸곡 후에는 길복으로 바꾸고, 모든 상사에는 익선관·백포·오서대·백피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⁴⁾(예조1안)

31) 정경희는 이러한 예조의 결정은 “역월제를 취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역월단상제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의 졸곡변제 방식을 교묘히 절충 … 그 본의를 말살하고 短喪의 기한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정경희, 앞의 논문, 264면.) 하지만, 전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조오례의』의 ‘내명부의 嬪 이하의 상복’ 조문은, 졸곡을 ‘복이 끝나는 시기’로 인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근거를 찾아 의절을 마련하려는 시도일 뿐, ‘본의를 말살’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2)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庚子.

33) 『宣祖實錄』 권126, 선조 33년 6월 辛丑.

34)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壬寅.

그런데 7월 12일, 묘향산에서 騰書한 실록을 통해 장경왕후 복제가 확인되면서 의인왕후 상복은 다시 논의되었다. 장경왕후상에서 중중은 자취상복을 입지 않고, 白木綿團領·生麻布帶·白靴를 갖추었다가 30일 만에 벗었다. 이에 장경왕후상의 전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 정한 상복이 예에 타당하다는 주장, 그리고 기년복의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 등이 대립하였다.

영의정 이항복은 장경왕후의 경우 “30일 만에 복을 벗은 것은 예문이 아니요, 俗禮를 인습한 것”으로 “지금 이미 예에 의해 성복하였으니 … 비록 전례는 아니더라도 또한 큰 잘못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덕형과 김명원 등도 『국조오례의』에 ‘내상재선’에 대한 명확한 예문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장경왕후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고 이미 결정된 상복을 입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이현국은 “30일 동안만 거행하고 즉시 길복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도리어 12일 만에 公除하여 期喪의 예를 보존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새로 결정된 상복제가 장경왕후 복제보다 나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윤두수는 자취복으로 30일을 입어 선왕의 예제를 따르자는 새로운 주장을 펴기도 했다.(윤두수案)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하였었는데, 이미 상고하여 왔으니 선왕이 정한 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장경왕후상의 전례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에 예조는 절충안으로서 앞서 정한대로 12일간 최복을 입은 후, 전례에 따라 백목면단령·생마포대·백화로 30일을 마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예조2안) 이에 따르면 “복을 점차 강쇄하는 원칙에 맞고, 선왕이 정한 제도를 지키는 뜻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선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史官은 禮經의 기년복을 그대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예조가 12일 공제하는 규례를 만들어내고 최복을 벗은 후에 이어 포대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喪事에 두 가지 복을 입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³⁵⁾

또한 三司의 관리들을 중심으로, 기년을 채운 후 상복을 벗는 禮經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35)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甲寅.

正言 尹暘이 【대사간은 朴弘老였다.】 내계하기를, “이번 대행 왕비의 상사에 상의 복을 기년복으로 제정한 데 대하여, 당초 예관이 자취로 의절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燕居할 때와 視朝할 때에는 각각 다른 복색이 있어 降殺하게 하고 모든 상사에 관계된 일에는 또한 최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예문이란 반드시 『오례의』를 말함인데, 앞서 12일 만에 벗는 것으로 정한 것과 뒤에 30일 만에 벗는 것으로 상고한 것이 모두 기재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근거할 만한 명문이 없는 것을 무릅쓰고 감히 구차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경을 좇아 단연히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기년상에 최복을 갖추는 것은 예의 바름이요, 白衣로 30일 만에 벗는 것은 오직 일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예의 바름에 의하여 의심없이 행한다면 전하로부터 고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 비록 일시적으로 행한 제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고례를 따르는 도리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³⁶⁾

기년복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국왕의 복제는 연거와 조회시에 다른 복색이 있고 상사와 관련될 때만 최복을 입는 방식이었다. 12일, 30일에 變服하는 절차는 모두 『국조오례의』에 명문이 없는 것이므로 예경에 따라 고례를 회복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였지만, (윤양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의인왕후의 복제는 기년복의 철저한 시행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조선 전기 백단령·마포대로 30일을 마치는 방식과 비교하면 자취상복을 입는 절차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⁷⁾ 물론 12일 만에 공제하는 방식이고 30일 만에 마치는 단상이었지만, 조선전기 ‘내상재선’의 경우 왕은 아예 자취상복을 입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복의 원칙이 강조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임진왜란 이후 참고할 전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의 원칙을 국가 전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인왕후 국휼에서 마련된 12일 공제와 30일 단상의 제도는 이후 인조대 인렬

36)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甲寅.

37) 정경희는 의인왕후의 복제에서 三司臣들의 기년단상제 철폐론이 거부되었고, 이것은 선조후반기 왕실의 예제운영에서 조종전례가 주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경희, 앞의 논문, 262면) 그러나 의인왕후 복제에서 자취상복을 입는 절차가 추가된 것은 포대 30일복인 조선전기의 기년단상제를 해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기년단상제의 한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단상제가 폐지되어가는 변화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왕후와 소헌제자, 숙종대 인경왕후와 인현왕후 기년복에도 적용되었다.³⁸⁾ 그러나 30일 단상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숙종대 단의빈 상례부터는 公除를 통해 공무상 임시로 상복을 벗지만, 기년동안 喪事에는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³⁹⁾ 이렇게 국휼의 단상제가 폐지되면서, 왕조례에서도 喪期를 지키는 상복제의 원칙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내상재선'의 국왕 복제 방식 비교

	성복	12일	30일	졸곡	기년
예조1案(7.1)	자취	백의·백대(公除)		길복(服盡)	
장경왕후(7.12)	백단령·마포대		길복(服盡)		
예조2案(7.13)	자취	백단령·마포대(公除)		길복(服盡)	
윤두수案(7.12)	자취		길복(服盡)		
윤양案(7.13)	자취(연거복·시사복 적용, 喪事에는 자취복)				길복(服盡)

* 服盡은 상복을 벗어 폐기하고 길복을 입는 것이고, 公除는 공무를 위해 임시로 상복을 벗는 것임. 예조 1안은 12일 공제, 졸곡 복진이었으나, 장경왕후 전례를 절충하여 30일에 복진하는 예조2안으로 변경됨. 윤두수는 공제 없이 30일 복진을 주장, 윤양은 공제 없이 기년을 채운 후에 복진해야 한다는 기년복의 원칙을 강조, 예조2안으로 최종 결정됨.

2) '내상재선'의 主喪 논쟁

'먼저 난 내상'에서 왕의 상복에 대한 논의는 주상을 결정하는 문제와도 밀접하

38) 인렬왕후상에서부터 杖制를 시행하여 '내상재선' 복제가 자취 杖期로 정해졌다는 기록이 있다.(『肅宗實錄』 권1, 숙종 6년 10월 癸丑.) 의인왕후상에서는 杖期和 不杖期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의 왕의 상복에 桐杖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상재선' 복제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39) 김윤정, 2014 앞의 논문, 248면: 물론 공제로 인해 변복하고 연거복·시사복을 따로 입는 것은 古禮나 『家禮』의 상복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과정에서 단상제를 폐지한 것이 고례의 회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지향이 그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 관련되어 있었다. 선조는 비록 30일 단상이었지만 12일간 자취상복을 입었고, 이것은 아내를 위해 기년복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妻服을 입는 왕과 父在爲母服을 입는 세자 중 누가 주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었다.

세종대 소헌왕후 국휼에서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주상의 역할을 담당했다. 세자는 부제위모복으로 자취 杖期服을 입었지만, 남편인 세종은 자취상복을 입지 않고 백목면단령·생포대·백화를 착용하고 30일 만에 벗었다.⁴⁰⁾ 성복시에도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을 거행했다.⁴¹⁾ 發引시에도 세자가 陪行했고 산릉에서의 매장 절차를 마친 후 우주를 받들고 돌아왔다. 虞祭와 卒哭 등의 주요절차도 모두 세자가 담당하였다.⁴²⁾ 이러한 세자 중심의 의식은 당시 세종이 아예 자취상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왕의 처상보다는 세자의 모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에서도 ‘내상재선’에 대한 상복은 왕세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³⁾

의인왕후상도 이러한 전례에 따라 세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세자는 발인과 산릉에서의 매장 절차에 참여했고, 우제와 졸곡 및 소상, 대상, 담제를 사실상 주관하였다.⁴⁴⁾ 그런데, 虞祭의 축문을 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왕과 아들인 세자 중 主喪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예조는 우제 이후 세자가 예를 행할 때 축문의 머리말을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禮記』 『奔喪』의 “모든 상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왕이 주상

40)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3월 甲午 “王妃喪制, 世子, 齊衰期年,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日而。】 衣裳…冠…首經腰經…帶…桐杖…疏屨, … 大殿, 白木緜團領生布帶白靴, 終三十日.”

41) 『世宗實錄』 권111, 세종 28년 3월 乙未 “世子, 率百官成服.”

42) 석창진, 앞의 논문, 98-110면: 석창진은 소헌왕후 국상의 주상이 남편인 세종인지 아들인 세자인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세종대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아들이 주상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다.

43) 『國朝五禮儀』 권3, “服制, 王世子斬衰三年, …【若內喪在先, 則服期,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日而。 卒哭前進見時, 白直領衣黑笠黑條兒白皮靴, …】”

44) 『宣祖實錄』 권138, 선조 34년 6월 癸巳 “章聖懿仁王后祥日也, 王世子行祀于孝敬殿.”: 『宣祖實錄』 권151, 선조 35년 6월 丁巳 “朝, 王世子自孝敬殿還宮後, 問安, 懿仁王后大祥.”

이므로 “삼가 세자를 보낸다[謹遣世子]”라고 축문의 머리말을 써야하지만, 실제 세자가 예를 행한다는 점에서 ‘哀子某’라고 써야하는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⁴⁵⁾

이항복 등은 세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세자가 ‘哀子某’로 칭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축문에 “삼가 세자를 보낸다”고 하는 경우, ‘遣’은 임금의 신하를 보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자에게 ‘견’자를 쓰는 것은 “어세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왕의 예는 사대부의 상례와 달라서, 선조가 이미 30일로 복을 벗었기 때문에 의례를 주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儀禮』의 “아내의 상에 남편이나 자식이 주관한다”는 조문은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자식이 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세자를 바로 ‘哀子某’로 칭하는 것이 절차상 순편하다고 보았다.⁴⁶⁾

반면 홍문관은 여러 전례를 통해 우제 이후에는 세자가 예를 행하더라도 축문 머리말에는 “국왕이 삼가 세자를 보낸다[國王謹遣世子]”라고 하여 왕이 주상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장의 사용은 세자가 친히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감히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고, 임금의 명이라 말하고 거행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⁴⁷⁾ 고례를 검토하면 『儀禮』나 『禮記』 「喪服小記」, 『杜氏通典』 등에 아들도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예문이 나오지만, 이것은 남편이 유고시 아들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大經은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지가 主祭者가 되”고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들이 主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명회전』을 인용하여 고황후의 상례 때 황제는 상복을 벗은 이후임에도 제사를 직접 행했다는 실례를 제시하였다.⁴⁸⁾

이러한 홍문관의 견해에 따라 “삼가 세자 모를 보낸다[謹遣世子某]”로 머리말을 만들어 축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예조는 ‘謹遣’이라는 용어

45) 『宣祖實錄』 권132, 선조 33년 12월 壬午.

46) 『宣祖實錄』 권132, 선조 33년 12월 癸未.

47) 『寒岡集』 권4, 「答禮曹判書戊申」 “以國王謹遣世子爲頭辭, 無乃或無妨乎? 世子以喪者親祭, 而不敢自主, 稱上命以獻, 無乃或順於情理乎?”

48) 『宣祖實錄』 권132, 선조 33년 12월 丙戌.

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먼저 세자가 이미 상차에 있으므로 삼가 보낸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조선의 축문에 ‘근견’은 왕이 관원에게 명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말이므로 구분해야한다고 보았다. 이에 『家禮』의 “효자 아무개가 개자인 아무개에게 상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孝子某使介子某執其常事]”라는 축사를 인용하여, ‘근견’ 대신 ‘使’자를 쓰고자 하였다. 이에 “국왕이 세자모를 시켜 감히고 한다[國王使世子某敢告]”로 축문의 머리말을 삼도록 제안했고, 이 사안은 대신들의 회의를 거치게 되었다.

“이는 바로 變禮입니다. 禮經에 상고해 보아도 이미 의거할 만한 글이 없기 때문에 사대부의 상례를 인용하여 증거하였습니다마는 신들도 그것이 국가의 예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밖에는 비슷한 글을 볼 수 없었고 오직 이 글만이 相當할 것 같아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축문에 항상 ‘謹遣’이라고 쓰는 것은 모두 상께서 관원에게 명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말이니, 그것을 이끌어다가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意義가 타당치 못한 듯합니다. 이른바 ‘使世子’는 말은 세자가 저곳에 있거나 동궁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통용할 수 있습니다.”⁴⁹⁾

대신들은 이 사안을 예경에 근거가 없는 變禮로 간주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사대부 상례는 국가의 예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하에게 쓰는 ‘遣’자와 구분하여 세자에게 ‘使’자를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사대부의 예인 『가례』를 왕조례에 창의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왕조례의 특수성보다는 예의 보편성에 대한 지향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축문식은 이후의 ‘먼저 난 내상’인 인조대 인렬왕후상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다.⁵⁰⁾

이러한 논의를 거쳐 내상이 먼저 난 경우에는 아들이 아닌 남편이 주상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것은 조선전기 소헌왕후상과 『국조오례의』에서 세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과 차이를 갖는다. 18세기 『국조상례보편』 단계에 이르면 남편인 왕의 주상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실히 드러난다.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49) 『宣祖實錄』 권132, 선조 33년 12월 己丑.

50)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庚申.

영조는 “‘내상이 먼저 있으면’ 조항에 우제와 줄곡 또한 왕이 親行하는 것으로 마련”하도록 명령했고, 세자가 영조 생존시 사망한 정성왕후의 우제를 지내는 것을 ‘攝行’으로 표현하였다.⁵¹⁾ 『국조상례보편』에는 우제부터 담제까지 왕이 친행하는 의절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세자가 거행하는 의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主喪인 왕의 명령에 따른 攝行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또한 정성왕후의 줄곡제를 영조가 親行하면서, 세자가 亞獻을 담당한 것은 ‘내상재선’의 주상이 남편인 왕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영조는 정성왕후의 練祭와 祥祭를 친행했고, 정성왕후의 망제와 삭제 등을 세자에게 섭행토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
- 51) 『國朝喪禮補編』 권5, 受教分類下 虞祭 “傳曰, 若內喪在先條, 虞卒哭, 亦以親行磨鍊. … 傳曰, 世子攝行時, 傳香令彌善爲之, 更思之, 凡祭奠一依丁酉年例, 令元良替行, 則猶可也. … 【徽寧殿祭享王世子攝行時】”
- 52) 『승정원일기』에는 세자의 ‘친행’과 ‘섭행’이 혼동되어 있다. 육우제를 친행, 칠우제를 섭행으로 표현했지만, 모두 세자가 ‘친히 섭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承政院日記』 책1145, 영조 33년 6월 13일 “王世子親行徽寧殿六虞祭, 陪祭入對時, 左承旨具允明, 假注書朴相老, 記注官金教材, 記事官趙有臣, 以次陪從.”; 6월 14일 “王世子攝行徽寧殿七虞祭入對時, 同副承旨沈鏡, 事變假注書李行源, 記事官洪粹·徐秉德, 陪從.”)
- 53)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7월 丙辰 “徽寧殿卒哭, 至是退行, 上親祭, 王世子亞獻.”;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12월 丁卯 “上親行徽寧殿練祭, 大司成尹東度題練主, 上行初獻, 王世子行亞獻, 大臣行終獻.”; 『英祖實錄』 권91, 영조 34년 2월 庚午 “詣徽寧殿齋室, 具練服, 親行祥祭.”;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8월 甲戌 “上親行孝昭殿望祭, 命世子, 攝行徽寧殿望祭.”;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10월 庚申 “上親行孝昭殿朔祭, 命世子, 攝行徽寧殿朔祭.”; ‘내상재선’의 주상 논의는 기존에 연구된 바 없는 본고의 새로운 논지이다. 그래서인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1인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내상재선은 아들인 왕 세자가 주상이 되고, 이는 숙종대 인현왕후, 영조대 정성왕후 등의 국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는 어떠한 사료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영조가 정성왕후 줄곡, 연제, 상제를 ‘親行’하고 여타 제사를 세자에게 ‘攝行’하게 한 사료들은 심사위원의 비판이 오류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조선시대 국훈 관련 논문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용어와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서, 연구의 심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임진왜란 직후 치러진 의인왕후 국혼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국조오례의』는 여전히 국혼의 기본서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典籍과 물자의 부족은 의례 실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의인왕후 국혼에서는 끊임 없이 물자 부족이 지적되었고, 『국조오례의』와 달리 대렴에 솜옷을 사용한 것은 의례의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장지를 선정할 때도 참고할 치부책이 유실된 상황에서, 풍수설이 난무하였고 『국조오례의』의 5개월 장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전쟁 이후 여전히 명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再造之恩을 입은 조선의 명나라 눈치보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선은 더욱 철저히 제후국의 의례를 실천해야 했고, 왕비의 국상에서 당연히 사용되었던 ‘山陵’이나 ‘后’라는 용어의 僭禮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타자의 시선 속에서 왕조례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도 왕조례의 특수성보다는 성리학적 명분론의 원칙에 더욱 천착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의인왕후의 국혼은 ‘먼저 난 내상’으로, 『국조오례의』에는 참고할 내용이 부족했으므로 새로 의례를 정비해야 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전례를 상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의 원칙을 강조하는 예학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 ‘내상재선’에 대한 왕의 상복은 백단령·마포대로 30일을 마치는 短喪에 불과했고, 父在爲母喪의 기년복을 입는 세자가 主喪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의 상복은 처상의 기년복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12일간 자취상복을 입도록 정해졌다. 이후 백단령·마포대로 30일 만에 마치는 장경왕후상의 전례가 확인되면서, 12일간 자취상복을 입고 이후 30일 만에 마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12일 만에 公除하는 방식이고 30일 만에 마치는 단상이었지만, 조선전기 ‘내상재선’의 경우 왕은 아예 자취상복을 입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복의 원칙이 강조된 것이었다. 또한 왕이 주상이 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왕이 세자로 하여금 의례를 주관하게 한다는 문장을 축문에 명시하였다. 『가례』를 근거로 ‘使世子’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가례』를 왕조례에 창의적으로 결합

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임진왜란 이후 보편적인 예의 원칙에 따라 왕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家禮』 연구로 대표되는 사대부 예학의 성과가 일정부분 왕조례에 적용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변화 자체도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왕조례의 특수성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순과 절충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2017. 5. 10), 심사일(2017. 5. 18), 게재확정일(2017. 6. 5)

참고문헌

- 『世宗實錄』 『宣祖實錄』 『仁祖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國朝五禮儀』 『國朝喪禮補編』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宣祖懿仁王后祔廟都監一房儀軌』
『寒岡集』
- 고 영, 2016 「朝鮮後期 王후의 염습의대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은, 2004 「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祔」, 『규장각』 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윤정, 2016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한국학연구소.
_____, 2014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 노대환, 2012 「광해군대의 궁궐 경영과 풍수지리설」,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 안희재, 2010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현, 2014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 이덕형, 2010 「선조대 유릉 택지에서 드러나는 왕릉 조영의 변화와 원인」,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 이영춘, 2010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戊戌苦次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 이지훈, 2014 「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 이현진, 2011 「순조의 장녀 明溫公主의 喪葬 의례: 『明溫公主房喪葬禮瞻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6, 조선시대사학회.
_____, 2012 「정조대 文孝世子の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14 「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_____, 2015 「순조대 惠慶宮의 喪葬 의례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16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16 「조선후기 綏嬪 朴氏의 喪葬 의례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6, 조선시대사학회.
- 정경희, 2000 「朝鮮前期 禮制·禮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철, 2014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 지두환, 1996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명기, 2015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 한국학연구소.
- 허지은, 2004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 본 조·명관계」, 『사학연구』 76, 한국사학회.

Abstract

The Feature and Meaning about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Ui-in.

Kim, Yunjung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Ui-in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ime right after the Imjin-year War. It was carried out in the tense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forces of Ming Dynasty that were stationed in Chosun, and the lack of Materials and documents.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use the terms of 'sanlung' and 'hu' that were unallowed in Vassal State.

The Queen Ui-in died earlier than her husband the King sunjo. The King sunjo wore 1year mourning for his wife, but he removed it for official affairs after 12days and finished it in 30days Actually. Nevertheless this way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ritual than the way of the Early-Chosun Dynasty that didn't wear the proper mourning costume. The King sunjo was considered as the Host of Funeral instead of his son, the crown prince. The statement stated in the passage that the king should let the crown prince perform the ritual to make sure of the Host of Funeral.

Key words : Queen Ui-in, National Funeral, Imjin-year War, Vassal State, Funeral for The Queen in Advance, Host of Funeral